

원천징수 동의(신규, 변경, 철회)서¹⁾

(앞 쪽)

공 무 원	소 속	수지초등학교		직 급		
	성 명			생년월일		
원 천 징 수 동 의 사 항	구분 ²⁾	동의사항 ³⁾	금액(단위:원)	동의기간 ⁴⁾		동의사유 등 ⁵⁾
				시작	종료	
	신규	친목회비	10,000	2026년 3월		징수납부 편의

본인은 「공무원보수규정」 제19조의2제1항제5호 및 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 제18조의2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
상기 내역이 매월 본인의 보수에서 원천징수 되는 것을 동의(또는 변경, 철회)합니다.

2026년 월 일
신청인 성명 (서명 또는 인)

※ (인)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.

수지초등학교 지출원 귀하

※ ○○○은 「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출원이 소속된 기관을 말한다.

유의사항
원천징수 동의(신규, 변경, 철회)서에 원천징수 동의 항목(예 : 상조회비, 동호회비 등)을 모두 기재
신규 신청, 변경, 철회로 구분하여 작성
구체적으로 기재 (예 : OO상조회비)
종료시점을 미기재할 경우에는 변경, 철회 등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봄
원천징수 동의(또는 변경, 철회)사유를 반드시 기재

<별지 제1호 서식>

부양가족신고서

부양의무 공무원	성명		생년월일	
	직급		소속	수지초등학교

부 양 가 족 상 황	성명	관계	생년월일	직장명 /기관성격*	신고사유 (혼인, 출생, 사망 등)	비고 (신규, 변경, 철회)

특기사항 :

- ① 부양가족 중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 (장애진단서 등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)을 명시
- ②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배우자가 가족수당 중복 지급이 불가능한 공무원·사립학교 교직원·별정 우체국 직원·공공기관 직원·지방공사 직원·지방공단 직원·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직원 등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속기관 및 연락처, 해당기관에서의 가족수당 지급여부를 반드시 명시
- ※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때에도 중복 지급 안 됨
- * 부양가족의 직장명 및 기관성격을 구체적으로 기재
(‘기관성격’은 ②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(예시: 공무원, 사립학교, 별정우체국, 공공기관, 지방공사, 지방공단, 국립학교 등).
‘직장명’에 자영업은 ‘자영업’으로 표기 가능)
- ③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24조에 따라 소속 기관장은 중복지급 여부 등 부양가족의 변동 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은 허위의 방법(위②의 중복지급 포함)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지급을 정지토록 하는 관련규정과 가족수당의 지급대상 및 부양가족의 기본요건 등을 숙지하고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7항에 따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위와 같이 부양가족을 신고합니다.

첨부 : 1.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 1부

2. 장애진단서 등 「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 제10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
(해당자에 한함)

2023년 월 일

신고인 성명 (인)

대리신고인 성명 (인) 또는 서명 관계 (의)

위의 사실을 확인함

2022년 월 일

소속기관장 수지초등학교장 (인)